목련상규정

개정: 2020. 11. 16.

제 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.) 목련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시상 대상) 목련상은 본교 교수, 직원으로서 교육, 연구, 실천 부문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뤄 창학 이념과 미래비전을 구현하고, 이를 통해 경희 고유의 진취적 학풍 조성 및 대학의 대내외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한다.

제 3조(시상부문 등) 목련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.

- 1. 교육 :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강의 혹은 대내외적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해 '경희 교육'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
- 2. 연구 : 국내외 학계에서 인정받는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였거나 융복합 분야, 연계 클러스터 등 새로운 연구 분야 혹은 연구 방법을 개발해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
- 3.실천 : 교육, 연구 성과를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해 대학의 사회적 · 지구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했거나 새로운 실천 모델을 개발해 대학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

제 4조(추천절차) ① 목련상 후보는 소속부서장, 교수, 직원, 학생, 동문 등 본교 구성원 또는 본인이 추천할 수 있다.

- ② 목련상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[별지]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커뮤니케이션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 기간 내에 Search Committee를 구성해 후보자 검색 및 추천 활동을 할 수 있다.
- ④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접수된 목련상 후보 추천서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제 5조(수상자 결정) ① 심사위원회에서는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 공적을 심사한다.

- ② 목련상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- ③ 수상자 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6조(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우리대학 내·외부의 명망있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서울캠퍼스 부총장과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목련상 후보자, 추천인, 관련자 등 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7조(회의소집)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서를 접수받은 경우 즉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 8조(비밀유지) 목련상 심사와 관련된 자는 심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

야 한다.

제 9조(추천기간) 목련상 수상 후보자 추천기간은 매년 9월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

제 10조(시상) ① 목련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.

② 목련상 시상은 상패 또는 조각상으로 한다.

제 11조(주관부서) 목련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주관한다.

제 12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